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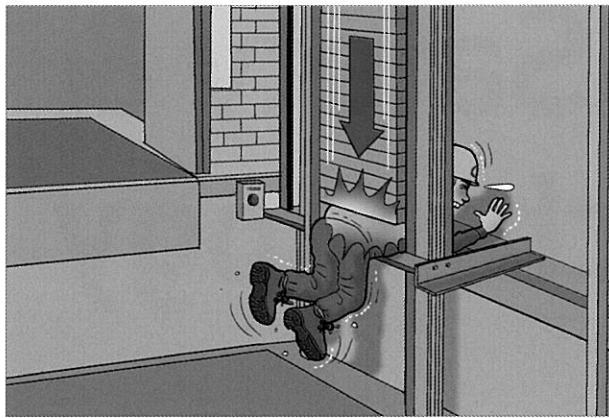


## 화물용 승강기 점검 중 균형추에 협착

업종	고무및플라스틱제조	가해물	균형추	피해정도	인적	사망 1명
생산품	플라스틱생활용기	재해유형	협착	물적	-	

### 1. 재해개요

자재 운반용 화물용 승강기 점검을 위해 피재자가 승강기를 5층으로 이동토록 조작 후 승강구 도어스위치를 종이컵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점검하기 위해 1층 승강통로로 내려감(※ 승강기는 상승하는 중). 승강통로에서 점검 중 균형추(50kg×34개)가 하강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여 균형추와 구조물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.



### 2. 재해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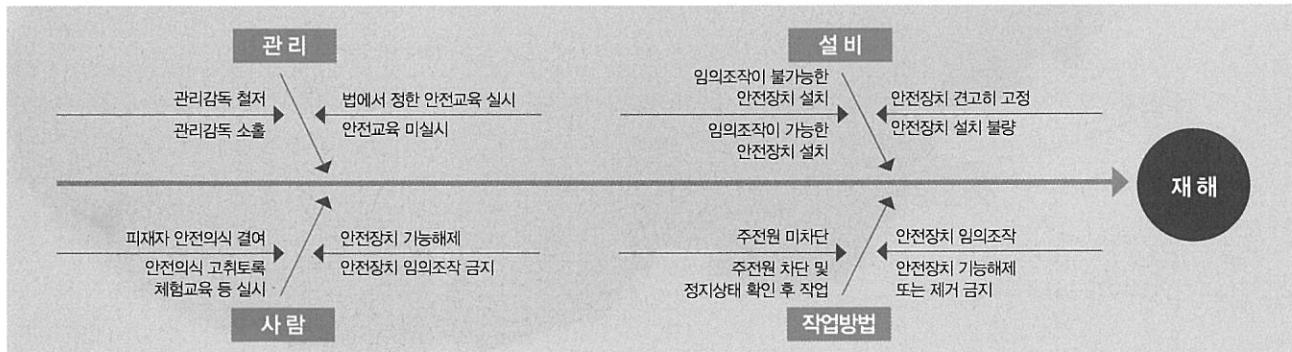
- ① 승강기 주전원 미차단
- ② 안전장치 설치상태 불량
- ③ 안전장치 기능해제 후 작업
- ④ 관리감독 소홀
- ⑤ 안전교육 미실시

### 3. 예방대책

- ① 비정상 작업시 주전원 차단 및 기계설비 정지 확인 후 작업
- ②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안전장치 설치
- ③ 안전장치 기능 해제 또는 제거 금지
- ④ 관리감독 철저
- ⑤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

### 4. 법 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- 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## 세척실 내 폭발

업 종	표면도포제품제조	가 해 물	폭발화염	피해 정도	인적 물적	부상 1명, 사망 1명
생산품	휴대폰케이스코팅	재해유형	폭발			-

### 1. 재해개요

휴대전화 케이스를 코팅하는 사업장을 인수하여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세척기를 시험 가동하였으나 유기용제 냄새가 심하게 나 생산부 직원 2명이 원인파악을 위해 세척실 안으로 들어가 점검을 하던 중 정전기로 추정되는 발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여 8주 이상을 요하는 화상으로 입원 치료 도중 1명이 10일 만에 사망함.



### 2. 재해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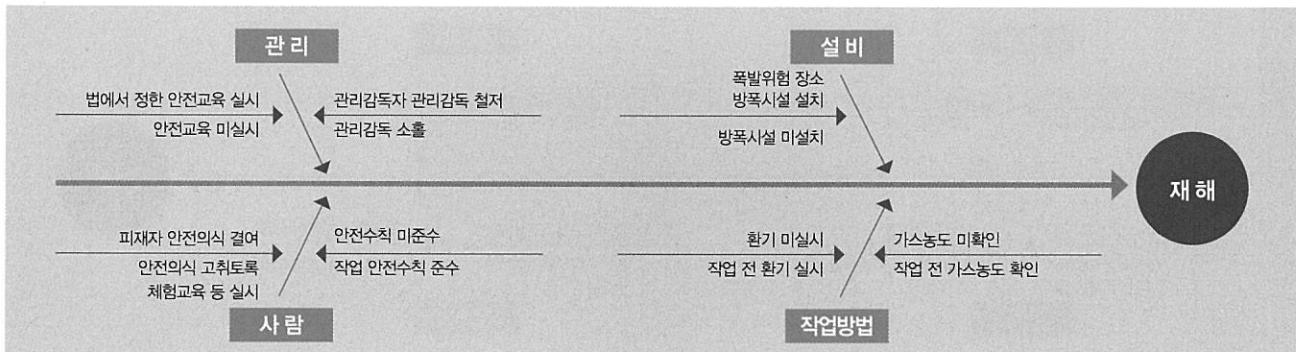
- ① 폭발위험장소 환기 미실시
- ② 폭발위험장소 가스농도 미확인
- ③ 세척실 내부 방폭시설 미설치
- ④ 관리감독 소홀
- ⑤ 안전의식 결여

### 3. 예방대책

- ① 출입 전 환기 실시
- ② 출입 전 가스농도 확인
- ③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방폭시설 설치
- ④ 관리감독 철저
- ⑤ 안전의식 고취토록 체험교육 등 실시

### 4. 법 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- 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

## 기계톱 반발로 사망

업종	임업	가해물	기계톱	피해정도	인적	사망 1명
생산품	벌목 원목	재해유형	충돌		물적	-

### 1. 재해개요

벌목작업장에서 피재자가 벌목된 원목들을 정리정돈 하기 위해 기계톱으로 원목을 절단하던 중 기계톱 가이드판이 절단목 사이에 끼어 빠지지 않자 발로 원목을 고정하고 무리한 힘으로 빼내던 중 기계톱이 원목에서 빠지며 튀어나와 피재자의 안면부와 충돌하여 사망함.



### 2. 재해원인

- ① 무리한 힘으로 기계톱 빼냄
- ② 안전모, 안면보호망 등 보호구 미착용
- ③ 기계톱 엔진 미정지
- ④ 사고위험 위치에서 작업
- ⑤ 안전교육 미실시
- ⑥ 관리감독 소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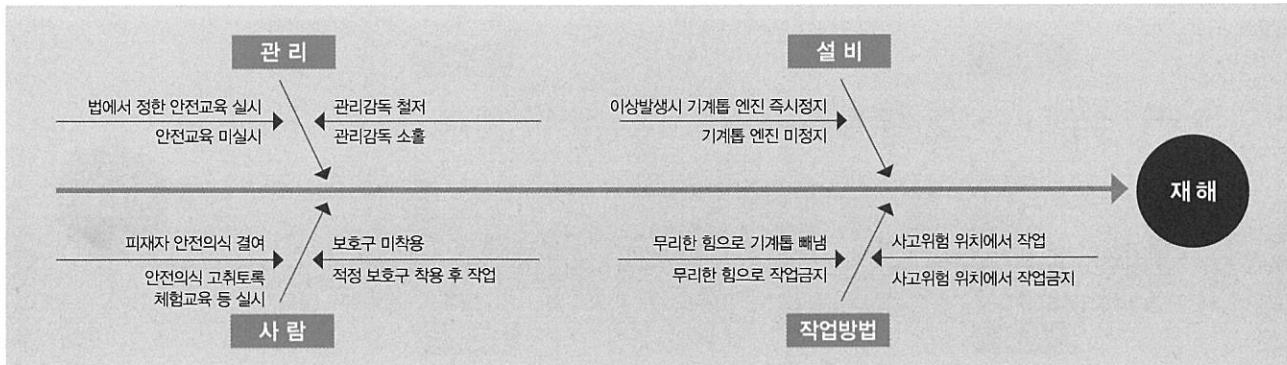
### 3. 예방대책

- ① 이상 발생 시 무리한 힘으로 작업 금지
- ② 안전모, 안면보호망 등 보호구 착용 후 작업
- ③ 이상 발생 시 기계톱 엔진 즉시 정지
- ④ 사고위험 위치에서 작업금지
- ⑤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
- 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 철저

### 4. 법 위반사항
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
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## 갱품 해체 작업 중 추락

업종	건설업	가해물	공사장 바닥	피해정도	인적	사망 1명
생산품	아파트 건축	재해유형	추락	물적	-	

### 1. 재해개요

아파트 공사현장 아파트 외벽 갱품을 해체하는 작업 중 갱품이 외벽으로부터 탈락되면서 약 30m 아래 바닥으로 낙하함. 갱품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도 동시에 추락하여 사망함.



### 2. 재해원인

- ① 갱품 낙하방지조치 미실시
- ② 작업 전 안전점검 미실시
- ③ 아파트 벽체와 갱품의 체결 불량
- ④ 피해자 보호구 미착용
- ⑤ 추락방지망 등 미설치
- ⑥ 관리감독 소홀

### 3. 예방대책

- ① 갱품 해체작업 시 인양장비에 매다는 등 낙하방지조치 실시
- ② 작업 전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
- ③ 아파트 벽체와 갱품의 체결 철저
- ④ 안전대,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
- ⑤ 추락방지망 등 안전장치 설치
- ⑥ 공사현장 관리감독 철저

### 4. 법 위반사항
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(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
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